

2016. 1.20.(수) ~
1.29.(금) / 10일간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3
2.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3
3.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6
4.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현 조례안 ...	10
10. 장성군 농특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10
11.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1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	12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조손가정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 장성군 농특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근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김옥, 김희식 의원
- 제안이유
 - 노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 가족들에게도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등(안 제3조)
 - 조례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안 5조)
 -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검사(안 제7조)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제1항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제명 중 “사회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수정하여 의결

2.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정비

■ 주요내용

○ 장성군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

○ 조례 중 별표·별지서식 개정대상(제2조 관련)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행정서식	개정사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1, 증인의 선서서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주민등록번호 삭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 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승계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행정서식	개정사항
장성군 건축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동브랜드(365생, 드림빌)사용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동화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수수료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장성군 하수도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간연장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3.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14.12.30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나.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의 유급 직원 → 직원

-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20인 → 40인 이내)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4.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조건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차액보전에서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변경 (안3조)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의 연고자와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가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경우

- 장려금 지원 (안4조)

-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화장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 사망자 1구당 200천원, 개장자는 1기당 50천원을 지급 단,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만 지급

- 별지서식 정비

- 지원대상의 변경 및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

- 법적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5.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성경이 중복되는 장수수당 폐지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 주요내용

- 장수수당 관련 조항 삭제 및 용어, 서식 정비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별지 1, 2, 3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 8.]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6.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용어 정비

- 주요내용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안 제4조-관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7. 장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부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이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도록 개정

- 주요내용

-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토록 정비(법조항 축소 25조 → 15조)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5조)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8.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부합하고, 자동차세를 타 지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토록 정비(법조항 축소 51조 → 9조)
-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 신설 (안 제4조)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9.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
 - 이용요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
 - 운행위탁 :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운영, 요금의 수납 등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8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10. 장성군 농특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 상표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9조)

-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 임기 : 2년

○ 품질인증 승인(안 제11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승인 및 품질인증 상표 사용

○ 시정명령(안 제12조)

- 위반횟수에 따라 품질인증상표 사용정지 및 품질인증 취소
 - 1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1개월
 - 2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2개월
 - 3회 위반시 품질인증 취소

○ 사후관리(안 제14조)

-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위 유지를 위해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11.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기업체, 전원 및 다세대주택 증가추세와 더불어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종량제 봉투 → 수거용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어 처리에 따른 침출수,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이 심각 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로 전문업체에 위탁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부 폐자원 재활용 정책 부응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용역
- 위 치 : 장성군 11개 읍면
- 위탁자 선정방법 : 공개 경쟁 입찰
- 위탁내용 : 수집·운반 및 처리
- 사 업 비 : 502백만원(수집운반 282, 처리비 220)

○ 세부 위탁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 운반차량 유지관리 등

○ 향후계획

- 모집공고 : 2016. 1.
- 입찰적격자 선정 및 심사 : 2016. 2.
-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2016. 2.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행정절차 : 2016. 2.
- 계약체결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16. 2.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실시 : 2016. 3.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

1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 발의일자 : 2016. 1. 12.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지역 주민 및 소유권자의 재산권 제한 최소화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따라 해제권고를 받기 위함.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위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

■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우선해제 시설 검토
-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 미집행시설 현황
 - 총 1,604개소(면적:32,480,344㎡)의 군계획시설이 결정
 - 전체의 약 37%인 595개소(면적:29,731,431㎡) 개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시설 중 25%인 406개소, 1,827,015㎡
 - 예상사업비 : 약 388,475백만원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 29.)